



사회적 법익 침해

제1장 보도 윤리 위반	48
제2장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50
제3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53
제4장 성관련 보도	55
제5장 자살관련 보도	57
제6장 폭력묘사	59
제7장 충격·혐오감	63
제8장 기사형 광고	69

제1장 보도 윤리 위반

사례. 18

의결번호	제2018-1230호
매 체 명	연합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1월 29일
기사제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

1. 보도내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의 제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선양의 한 교민은 29일 “정 전 장관이 어제 선양을 경유해 북한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이 대한항공 KE831편으로 선양에 도착 후 고려항공 JS156편으로 평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의 이번 방북은 미국 등외지지 하에 남북이 30일부터 북측구간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의 방북은 또 미국 중간선거 이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을 담고 있으나 당시 정 전 장관이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로 밝혀졌다.

비록 정부의 대북정책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북한 관련 보도는 접근제한성 등의 특성상 취재 시

사실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 및 국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도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장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사례. 19

의결번호	제2018-928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7월 14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일본 3대 엽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1. 보도내용

「(전략) 소년들은 준코에게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았다. 강제로 술을 먹여 토하게 만든 다음 토사물을 먹게 했다.

준코는 배설한 소변, 대변 심지어 맞아서 나온 혈흔까지 핥아먹었다. 소년들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손과 발에 비닐봉지를 쓰고 폭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손, 발, 정강이, 무릎 등에 라이터 기름을 발라 불을 질러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즐겼다.

또한 ○○과 ○○ 안에서 폭죽을 터트렸는데, 실제로 부검 결과 준코의 대장에 심각한 화상이 있었다고 알려졌다.(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 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일본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음란성, 잔인성이 담긴 범죄의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고 가학적인 폭력장면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0

의결번호	제2018-1229호
매 체 명	인터넷 팜타임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1월 19일 라이프면
기사제목	사이코패스 조두순 사건 정리, 상상할 수 없을만큼 '끔찍'...출소일, 출소날짜, 형량, 얼굴에 국민 분노

1. 보도내용

「(전략) 이후 ○과 ○○을 통한 성폭행으로 김 양의 머리 부분이 크게 다쳤고 번기나 배수관이 막혔을 때사용하는 물품으로 ○○을 빼려는 시도로 탈장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출소 예정 사실과 함께 해당 범죄사건의 피해 당시의 상황을 보도 하면서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3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사례. 21

의결번호	제2018-1000호
매 체 명	뉴스시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8월 9일 사회면
기사제목	‘5분 내, 흔적없이’...특수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1. 보도내용

「‘5분 내, 흔적없이’...특수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특히 송씨는 지난해 2월께 주행거리 조작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라는 이름의 차량 진단기를 수입, 기기를 자동차의 ○○○○ ○○○○○(○○○) 단자에 연결해 주행거리를 조작했다.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인가 받지 않은 신형 장비인 ○○○○○○○○○○는 주행거리 조작 흔적이 남지 않을 뿐더러 5분 내외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수법 및 사용된 장비의 명칭을 상세히 보도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4장 성관련 보도

사례. 22

의결번호	제2018-813호
매 체 명	매경 ECONOMY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30일 성경원 박사의 '성경(性敬) 시대'면
기사제목	요즘 유행하는 '립카페' 알고 보니...

1. 보도내용

「(전략) 토약질 나는 것을 참고 할 수 있는 한, 입속 깊숙이 ○○을 넣고 핥으면서 고군분투한다. (중략)

혼자서 미련 떨어지며 무턱대고 빨기보다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만 공략할 것이 아니라 ○○과 ○○과 ○○까지 좌우로 길게 하모니카를 불 수만 있다면 최고일 터다. ○○, ○○○, ○○ 등을 핥아주면서 젓꼭지나 엉덩이까지 쓰다듬어드리면 미치고 환장(換腸)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한다고 나가자빠질 여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해주는 데가 있다. 너무 좋아서 팔짝 뿜 노릇이다. 이름하여 립카페다. (중략)

무조건 옷을 벗기고 섹스를 하거나 여자가 갑자기 남자의 ○○를 애무해주는 것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 이게 바로 립카페가 갖고 있는 신통방통한 매력이다. (중략)

주머니 사정이 시원치 않은 남자나 시간이 없는 남자들도 립카페는 들락거리기 딱 좋다. 자동 안마기기도 있어 안마와 커피, 그리고 여성이 입으로 해주는 ○○○○까지 3종 세트다. 피곤에 지친 직장인들이 낮에 잠깐 들러 후딱 즐기기에 더할 수 없이 좋다.

일단 립카페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하늘을 보고 누워 있으면 여자가 ○○를 물수건으로 쓱쓱 닦아준 뒤 손으로 살살 만지다 바로 입으로 해준다. 갑자기 따뜻해지니 '헉'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사정을 하지 않는 한 계속 해주는데, 언니들은 갈고닦은 실력으로 빨리 사정시키기 위해 특별

노하우가 있겠지만 스킬이 다르고 레퍼토리도 있다. 게다가 하해(河海)와 같은 아량으로 입에다 멋지게 부릴 수 있게 해준다. 매몰찬 알람이 삐비빅 삐비빅 울리면 기분은 확 깨지만 돈이 아깝지 않다고 느낄 만큼 너무너무 좋다. 마치 길 가다 생판 모르는 예쁜 여성이 ○○○○를 해주는 듯로도 맞은 느낌이다.

더 화끈하려면 흘랑 벗는 올탈(?)과 옷통만 벗는 상탈(?)에다 여자 둘이 번갈아 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체위도 할 수 있다. (중략)

아내들이여, 테크닉을 전수 받으러 립카페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2.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립카페’라 지칭되는 퇴폐업소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현저히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해당 퇴폐업소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며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5장 자살관련 보도

사례. 23

의결번호	제2018-22호
매 체 명	동아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12월 19일자 14면
기사제목	‘샤이니’ 멤버 종현, 청담동 레지던스서 숨진 채 발견

1. 보도내용

「(전략) 경찰 관계자는 “종현이 발견된 레지던스에 있는 ○○○○에 ○○이 타고 있었다. 연기를 들이마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석탄의 한 종류인 ○○은 건설현장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쓰인다. 종종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다 질식사고가 난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을 사용한 자살 방법 및 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4

의결번호	제2018-282호
매 체 명	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월 23일 사회면
기사제목	“밥 좀 챙겨먹어” 집주인에게 남긴 670만원

1. 보도내용

「(전략) 사건을 수사한 부산 ○○경찰서 홍○○(○○) 경장은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줬다. “농약으로 음독(飲毒)자살한 시신은 속이 타 들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장씨는 반듯이 누워있어요.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없어요. 잠든 것처럼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시신이 ‘고통의 흔적이 없이 홀가분해 보였다’고 묘사하였다. 이는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6장 폭력묘사

사례. 25

의결번호	제2018-660호
매 체 명	노컷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8일 사건/사고면
기사제목	“유영철보다 더한 싸이코” 데이트 폭력 폭로

1. 보도내용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숨이 안 쉬어질 만큼 때리다가 (내가) 죽으려고 하니 몸을 막 흔들고는 ‘네가 그냥 죽으면 재미없다’며 갑자기 무기를 찾더니 보온병으로 머리를 계속 때렸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몇 시간 뒤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울다가도 또 웃는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남자친구는 지속적인 폭행은 물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남자친구는) 평생 너는 내 장난감”이라며 “나(남자친구)는 사람을 자살하게도 만들어 봤으니 이젠 널 자살하게 해줄게, 광주 바닥에서 걸레로 질질 기어 다니게 해준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남자친구는 이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 뒤 ‘오빠 저는 걸레입니다 좀 먹어주세요 10번 외쳐’라며 강요하고는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 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학적인 폭력 장면 및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6

의결번호	제2018-1008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8월 24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쪽방촌'에 혼자 사는 90대 할머니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1. 보도내용

「'쪽방촌'에 혼자 사는 90대 할머니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제하의 사진

© 연합뉴스

핫이슈

'쪽방촌'에 혼자 사는 90대 할머니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1000 기사

업데이트 : 2018-08-28 17:20:51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 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노인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잔인한 사진을 사용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7장 충격·혐오감

사례. 27

의결번호	제2018-679호
매 체 명	인터넷 국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24일 시사면
기사제목	새끼말게 탄 채 구조된 새끼 길고양이... “한쪽 귀 청각 상실” 참혹

1. 보도내용

「새끼말게 탄 채 구조된 새끼 길고양이... “한쪽 귀 청각 상실” 참혹」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고양이가 불태워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고양이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8

의결번호	제2018-1184호
매 체 명	아시아경제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0월 31일 사회면
기사제목	“뼈가 몸에 좋다?”…중정부 허가에 호랑이·코뿔소 수난 시대

1. 보도내용

「“뼈가 몸에 좋다?”…중정부 허가에 호랑이·코뿔소 수난 시대」 제하의 사진



뼈가 잘려나간 채 발견된 코뿔소의 처참한 모습. 사진 = Loweld Rhino Trust

국에서 목종이는 호랑이 상골 수오를 차우기 위하 타국 호랑이 시원에서 담근 호랑이술 사진 = 54연합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호랑이가 병에 담겨 있는 장면, 코뿔소가 뿔이 잘려 죽어있는 장면 등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9

의결번호	제2018-1246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1월 22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나를 웃겨보라”며 펄펄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 강제로 집어넣은 회장

1. 보도내용

「“나를 웃겨보라”며 펄펄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 강제로 집어넣은 회장」 제하의 사진 및 영상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일본에서 기업 회장이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을 강제로 집어 넣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을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불안감,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8장 기사형 광고

사례. 30

의결번호	제2018-582호
매 체 명	디트news24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6일 기타면
기사제목	세종시 ○○동에 세종○○의원 5일 개원

1. 보도내용

「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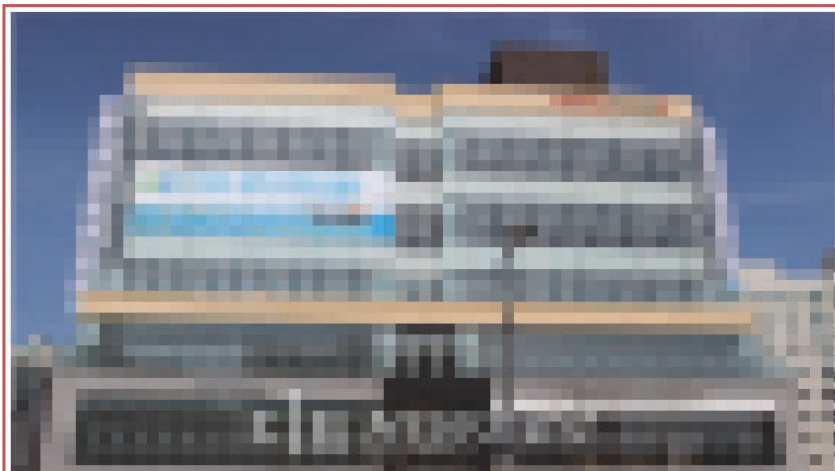
「세종시 ○○동에 세종○○의원 5일 개원」 제하의 사진

HOME > 보도자료 > 기타

세종시 ○○○○에 ○○○○ 5일 개원

김○○ 기자 | 승인 2018.03.06 09:53 | 댓글 2

○○○○ 전문의 대표원장, ○○○○○ 빌딩○층에 종합검진시스템 구축



세종시 ○○○○

「세종시 ○○동에 세종○○의원이 5일 개원했다. 세종○○의원은 ○○○○로 ○○○○○ 빌딩 ○층에 자리 잡았으며, 264㎡ 규모다. (중략)

세종○○의원은 진료실, X-ray실, 임상병리실, 기초검사실, 내시경실, 초음파실, 수액실 등을 갖췄으며, 대학병원급 장비를 도입했다. (중략)

김○○ 대표원장은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은 관심과 진심, 사랑”이라며 “세종○○의원 의료진과 직원들은 항상 밝은 웃음으로 세종시민의 의료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